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6월 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장 이 재 갑

●법률 제1743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을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 9. 29. 2014헌바254)의 취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하도록 개정된 신법조항은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9월 29일 이후에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2019. 9. 26. 2018헌바218)한바, 이를 반영하여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하도록 개정된 조항은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6월 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장 이 재 갑

●법률 제1743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